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변 호	3 - 338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9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☐ 제안이유

○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에 맞게 우리시 별정직에 대하여 전국적인 인력은 통일된 직명을 유지하고, 기타 직종은 표준화 된 직명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표준화 된 직명으로 변경 함(안 제3조)

○ 화생방요원 ⇨ 화생방관리원, 아동복지원 ⇨ 아동복지지도원,
부녀상담원 ⇨ 여성복지상담사, 비서요원 ⇨ 수행비서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화생방관리원
2. 아동복지지도원
3. 여성복지상담사
5. 수행비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) (생략) 1. <u>화생방요원</u> 2. <u>아동복지원</u> 3. <u>부녀상담원</u> 4. (생략) 5. <u>비서요원</u>	제3조(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) (현행과 같음) 1. <u>화생방관리원</u> 2. <u>아동복지지도원</u> 3. <u>여성복지상담사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수행비서</u>